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85

발의연월일: 2021. 8. 27.

발 의 자: 송언석・권명호・金炳旭

김영식 · 김정재 · 박덕흠

양금희 · 임이자 · 정희용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, 교제,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,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.3%,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.2%, 500억원 초과는 0.03%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,200만원(중소기업의 경우 3,600만원)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.

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 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'접대비'를 '기업활동촉진비'로 변경하는 한편,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.5%,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. 3%, 500억원 초과는 0.05%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4항제2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288호),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12289호),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284 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·단서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접대비"를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한다.

수입금액	비율
가. 100억원 이하	0.5퍼센트
나.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5천만원 + (수입금액 - 100억원) × 0.3퍼센트
다. 500억원 초과	1억7천만원 + (수입금액 - 500억원) × 0.05퍼센트

제75조의5제2항제1호, 제76조의14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"접대비"를 각각 "기업활동촉진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4항제2호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접대비의 손금불산입) ①	제25조(<u>기업활동촉진비</u> 의 손금불
이 조에서 " <u>접대비</u> "란 접대, 교	산입) ① <u>기업활동</u>
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	<u> 촉진비</u>
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	
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	
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	
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	
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	
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	
	,
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	②
에 지출한 <u>접대비</u> 중 대통령령	기업활동촉진비 <u></u>
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	
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	<u>기업활동촉진비</u>
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	
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	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	
니한다. 다만, 지출사실이 객관	<u>_</u>
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	<u>기업활동촉진비</u>
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	
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	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"신용카드 등"이라 한다)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<u>접대비</u> 가.·나. (생 략)
- 2. 제12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 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
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 는 <u>접대비</u>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 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 는 접대비
-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 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

1
기업활동촉진비
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2
기업활
동촉진비
3
기업활동촉진비
4
기업활동촉진비
3

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.

-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(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1. (생략)
- 2. 수입금액별 한도: 해당 사업 연도의 수입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)에 다음 표에 규정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.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<u>.</u>
4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1. (현행과 같음)
2
·

<u>수입금액</u>	<u>비율</u>
<u>가. 100억원</u> <u>이하</u>	0.3퍼센트
<u>나. 100억원</u>	3천만원 + (수입금액
<u> 초과 500억</u>	- 100억원) × 0.2퍼센
원 이하	<u> </u>
다. 500억원	1억1천만원 + (수입금 액 - 500억원) × 0.03
<u>초과</u>	<u> </u>

- ⑤ (생략)
- ⑥ <u>접대비</u>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,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75조의5(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 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제25조제2항에 따른 <u>접대비</u> 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
 - 2. (생략)
 - ③ (생략)
- 제76조의14(각 연결사업연도의 제소득)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<u>수입금액</u>	<u>비율</u>
<u>가. 100억원</u> <u>이하</u>	0.5퍼센트
나. 100억원	<u> 5천만원 + (수입금</u>
<u> 초과 500억</u>	<u>액 - 100억원) × 0.3</u>
<u>원 이하</u>	<u>퍼센트</u>
다. 500억원	1억7천만원 + (수입 금액 - 500억원) ×
<u>초과</u>	<u>0.05퍼센트</u>

	원 이하	<u>퍼센트</u>
	<u>다.</u> 500억원	1억7천만원 + (수입
		<u>금액 - 500억원) ×</u>
	<u> </u>	<u>0.05퍼센트</u>
	⑤ (현행과 길	<u> </u>
	⑥ <u>기업활동</u>	<u>촉진비</u>
) ′	75조의5(증명	서류 수취 불성실
	가산세) ① (*	현행과 같음)
	2	
	1	<u>기업활</u>
	<u> 동촉진비</u>	
	2. (현행과 같	음)
	③ (현행과 길	/
) ′	76조의14(각	연결사업연도의
	소득) ①	

- 1. (생략)
- 2.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가. (생 략)
 - 나. 기부금과 <u>접대비</u>의 손금 불산입 조정: 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 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<u>접</u> 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 입
- 3.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가. (생 략)
 - 나. <u>접대비</u>의 조정: 다른 연 결법인에 지급한 <u>접대비</u>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

다. • 라. (생 략)

- 4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(현행과 같음)
나 <u>기업활동촉진비</u>
<u>기업활동촉진비</u>
3
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기업활동촉진비
7]
<u>업활동촉진비</u>
다.•라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